

2026년도 학교법인 초헌학원 사무직원 공개경쟁임용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학교법인 초헌학원이 유지·경영하는 이일여자중학교, 이일여자고등학교의 사무직원 공개경쟁 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학교법인 초헌학원 이사장

1 선발예정 직렬 및 인원

시험구분	모집분야	채용예정 인원(명)	임용예정교	비고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명	이일여자중학교	

※ 임용예정시기 : 2026. 10. 1일자 발령예정

※ 임용예정교는 법인 및 학교사정에 따라 이일여자고등학교로 변경될 수 있음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 전형(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 심사 : 근무경력, 자격증, 생활기록부 출결사항, 자기소개서 합계점수

※ 동점자는 1차 서류심사 통과

나. 2차 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시험 실시

- 서류전형 30점, 심층면접 70점 합계점수를 반영하며, 60점이하 득점자는 탈락 처리됨

다. 3차 전형 : 학교장 제청으로 법인이사회 심의 후 최종 합격자 선발

※ 최종 합격자 발표는 법인사정(이사회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준용)

○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응시연령: 만18세 이상

다.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라.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우대조건[1차 서류전형에만 적용하며 1차 서류 심사 취득점수의 5% 가산]

4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비고
공고	2026. 08. 03(월)		이일여중·고 및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전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게재
서류접수 기간	2026. 08. 24(월)~08. 25(화)	2026. 08. 28(금) 16:00이후	학교 홈페이지 게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6. 09. 01(화) 10:00		학교 홈페이지 게재
최종합격자		2026. 09. 11(금) 16:00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5 응시원서 접수[현장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26. 08. 24(월) ~ 08. 25(화) 16:00까지

(접수가능시간: 09:00 ~ 16: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장소 : 이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응시원서의 사진(3.5cm×4.5cm)은 최근 6개월 이내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칼라사진

6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붙임1 소정양식)
 - 나. 이력서 1부. (붙임2 소정양식)
 - 다.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소정양식)
 -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신고서(특수관계자, 이해관계자) 각 1부. (붙임4,5 소정양식)
 -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 정부 및 자치단체 경력, 교육기관 및 사립학교 경력, 공공기관 등의 경력의 행정(사무) 분야만 인정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기재
 -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사.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아. 장애인수첩 사본 1부.(해당자)
 - 자.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각1부.
 - 차.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조회동의서 1부
 - 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결격사유 유무조회) 1부
 - 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임(*병원발급) 1부
- ※ 「가~아」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 「자~타」호 서류는 최종합격후 해당학교의 안내에 따라 작성 및 제출

7 서류 심사

가. 제1차 서류전형 심사 배점

구 분	서류전형					비고(가산점)
	경력	자격증	생활기록부 출결사항	자기소개서	합계	
배점	8	3	4	15	30	취득점수의 5%

나. 서류전형 평가 항목 및 채점기준

평가요소	채점기준	점수	비고(가산점)
경력	○ 3개월이상~10년이상 근무경력 평가 ※ 근무경력 인정 기준 - 정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 교육기관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 공공기관 등의 사무직원	8	취득점수의 5%
자격증	○ 사무분야 자격증 보유수 ※ 사무관리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시 0.5~1점 인정 ※ 보유 자격증 종류(아래표 참조) ※ 국가공인 자격증만 인정(예: 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 동종 자격증일 경우 : 상위자격은 1점, 하위자격은 0.5점	3	
생활기록부 출결사항	○ 출결사항 유무 ※ 지각, 조퇴는 3회를 결석 1일로 처리함	4	
자기소개서	○ 항목별평가요소	15	

다. 자격증 종류

직무분야	자격증 종류	비고
교육행정 (사무운영)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2급	

8 최종 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 제출한 자
-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 라. 채용신체검사서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실시에 따른 부적합 판정자

9 기타 사항

- 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 발표 후 14일 이내에 응시자가 직접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고,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 나. 제출서류가 기재 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 초헌학원의 결정에 따른다.

- 다. 공고된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우리 법인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연락 또는 우리학교, 익산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 라. 최종면접 결과 책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하지 않을 경우 이일여자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마.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초헌학원의 결정에 따른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063-720-5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원서 양식 1부. (붙임1 소정양식)
2. 이력서 양식 1부. (붙임2 소정양식)
3. 자기소개서 양식 1부. (붙임3 소정양식)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붙임4 소정양식)
5. 신고서(특수관계자, 이해관계자) 1부. (붙임5 소정양식)
6.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붙임6 소정양식)